C - 14 - 2012

- (다)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, 개인보호구 수시 점검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.
- (라)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마)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,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사)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아)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(150lux 이상의 조도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자)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차) 방수재료인 신나,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카) 화재·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타)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,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.
- (파)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하)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.